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. 2. 3 선고 2016가단184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2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29,857,890원과 이에 대하여 1998. 12. 7.부터 2006. 11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
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,
나. 6,621,985원과 이에 대하여 1999. 7. 16.부터 2006. 11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
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,
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청추지방법원 영동지원 2006가단3140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바,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다 되어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손영언